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원자력안전위원회 인접국 방사능 대응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시정원 2명(5급 1명, 6급 1명)의 존속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, 「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가 개정(대통령령 제0000호, 2025. 12. 00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

나. 예산조치 :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와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신·구정원대비표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12. 00. ~ 12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총리령 제 호

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 중 “2025년 12월 25일”을 “2027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별표 3 중 제10조 “2025년 12월 25일”을 “2027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한시정원) 인접국 방사능 대응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 한 통칙」 제25조제1항에 따라 <u>2025년 12월 25일까지</u>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위원회에 둔 다.	제10조(한시정원) ----- ----- ----- ----- <u>2027년 12월 31일</u> ----- ----- --.

신·구정원대비표

[별표 3]

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 한시정원표(제10조 관련)

직	급	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제10조	.		.	.	
			<u>관련 한시</u>	<u>관련 한</u>	
			<u>정원(존속</u>	<u>시정원</u>	
			<u>기한: 202</u>	<u>(존속기</u>	
			<u>5년 12월</u>	<u>한: 2027</u>	
			<u>25일)</u>	<u>년 12월 3</u>	
			.	.	
	.		.	.	
	.		.	.	